

#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개정(안)

2016 . . . .

문서번호	기획경영팀-17020	선임	팀장	본부장	대표이사		
결재일자	2016.08.10.	08/04 김지연	08/08 박진배	08/09 유석윤	08/10 이근		
공개여부	공개	협 조		책임	선임	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 (2408)호			08/05 신현정	08/06 정은석		

추진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6년도 이사회 운영계획(안) (기획경영팀-10030, 2016.05.30.)</li> <li>-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(공기업담당관-4799, 16.04.29)</li> </ul>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약내용	협약결과
	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출자출연팀	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운영관련 제도 개선	규정 정비 등 조치결과 통보
사 업 비	* 이사회 참석수당 상향 : 300,000원/인/회 (정관 개정 후 당연직 이사 수당 지급 적용)		

서울디자인재단 (기획경영팀)

# 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 유 □ ( ) 무 ■
	이 해 당 사 자 : 유 □ ( ) 무 ■
	전 문 가 : 유 □ ( ) 무 ■
	옴 브 즈 만 : 유 □ ( 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 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무 ■
	기 타 : 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□ 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 무 □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 유 □ ( ) 무 ■
	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무 ■
	기 업 : 유 □ ( 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관 계 기 관 : 유 □ ( ) 무 ■
	관 련 단 체 : 유 □ ( ) 무 ■

#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일부 개정(안)

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수립한 「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」에 따라 이사회 참석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재단 내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## 1. 제안근거

### ■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(공기업담당관-4799, 16.04.29)

#### 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

- 추진목적
  -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를 통한 市-기관간 소통협력 증대
  - 기관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포함)의 이사회 참석수당 현실화
- **지급기준 금액 : 300천원/회** (\* 정관 개정 후 당연직이사 수당 지급)
- 당초 「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」(15.9월, 서울시)에서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을 250천원으로 규정하였으나,
- ①투자기관 이사회 참석수당(500천원) 및 ②별도의 직무수당 없이 지난 '13년 이후 참석수당이 250천원으로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**참석수당을 300천원으로 증액 조정**  
(외부 비상임이사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)

### ■ 2016년도 이사회 운영계획(안) (기획경영팀-10030, 2016.05.30.)

#### 이사회 참석수당

- 당연직이사에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및 이사회 참석수당 상향조정
  - 정관 개정 : 정관의 당연직 이사 수당 지급제한 조항 삭제
  - **회의수당 지급기준 개정 : 현행 이사회 참석수당을 250천원에서 300천원으로 증액**
  - 회의비 예산조정

---

## 2. 주요내용

---

- 市 출자.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지침에 의거하여 **이사회 참석  
수당 인상**

□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<별표 1>

개정사항	현행	개정내용
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	이사회 참석수당 : 250,000	⇒ 이사회 참석수당 : 300,000

---

## 3. 참고사항

---

- **관련근거** :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(공기업담당관-4799,  
16.04.29)
- **절차** : 개정 내규안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
【별지】

##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중 일부 개정(안)

- 『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』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<별표 1>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 분	단위	단가	지급기준	비 고
이사회 참석수당	-	300,000	당해 회의 참석자	사안이 경미할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

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(안)				
<별표 1>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					<별표 1>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				
구 분	단 위	단가	지급 기준	비 고	구 분	단 위	단가	지급 기준	비 고
이사회 참석수당	-	250,000	당해 회의 참석자	사안이 경미할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	이사회 참석수당	-	300,000	당해 회의 참석자	사안이 경미할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
		이하 생략					이하 현행과 같음		
부 칙					부 칙				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					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0월00일 부터 시행한다				

#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

제정 2009.04.30  
개정 2009.08.21  
개정 2012.01.20  
개정 2012.05.31  
개정 2014.04.29.  
개정 2016.00.00.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각종 지문, 심사, 평가 등 회의 수당 및 특별강연, 세미나 등 강사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급범위)** 이 내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사회운영규정 제19조에 규정한 비상임이사와 감사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
2. <삭제 14.4.29>
3. 재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초청된 공무원, 외부전문가, 실무자, 고객 등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
4. 재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소양 및 직무교육, 채용시험, 신규사원연수, 워크숍, 세미나 등에 초청된 강사, 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및 심사, 감독수당
5. <삭제 12.5.31>
6. 각종 회의 자료의 사전심사수당 (신설 12.5.31)

**제3조(지급방법)** ①회의참석수당은 매 회의 개최 시 마다 일당액으로 지급한다.

②강사료 지급은 매 강좌마다 시간당액으로 지급한다.

③ <삭제 12.5.31>

④사전심사수당은 심사대상 회의자료의 사전 심사 시마다 심사 대상자료의 양과 난이도에 따라 지급한다.  
(신설 12.5.31)

**제4조(지급액)** ①회의참석수당 및 사전심사수당, 강사료 등의 지급기준액은 별표1과 같다. (개정 14.4.29)

②서면평가 및 서면회의 개최 시 수당 지급은 평가 및 심의, 의결을 요하는 등 중요사항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5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.

< 별표 1 > (개정 16.00.00)

##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

구 분	단위	단가	지급 기준	비 고
이사회 참석수당	-	300,000	당해 회의 참석자	사안이 경미할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
실무위원회 참석수당	-	70,000		
고객 참석수당	-	50,000		
자문회의 및 평가,감독의 참석수당	일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본료 : 100,000원</li> <li>◦ 초 과 : 50,0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재단 직원 및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</li> <li>▶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</li> <li>▶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</li> </ul>	
사전심사 수당	회당	A급 1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· 자료의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</li> <li>· 검토자료의 분량이 A4기준 100page 이상</li> </ul>	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		B급 10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· 자료의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</li> <li>· 검토자료의 분량이 A4기준 50page 이상</li> </ul>	"
		C급 7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심사평가 및 자료검토, 감독 등이 대체적으로 평이한 경우</li> <li>· 검토자료의 분량이 A4기준 50page 미만</li> </ul>	"
사이버 위원회 참석수당	일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본료 : 50,000원</li> <li>◦ 초 과 : 20,0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재단 직원 및 공무원,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</li> <li>▶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</li> <li>▶ 단순히 E-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수당만 지급</li> </ul>	

※ 예외적 규정 :

1. 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등에서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.

## 강사료 지급기준

등 급	대 상	지 급 액	
		최초1시간	초과시간
특별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·현직 장관(급)</li> <li>• 전·현직 대학총장(급)</li> <li>• 전·현직 국회의원</li> <li>• 전·현직 광역자치단체장</li> <li>• 대기업 총수(회장)</li> <li>• 국영기업체 사장</li> </ul>	400,000	300,000
특별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·현직 차관(급)</li> <li>• 전·현직 기초자치단체장</li> </ul>	300,000	200,000
일반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</li> <li>• 전·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</li> <li>•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, 언론인</li> <li>• 정부출연 연구기관장</li> <li>• 기업·기관단체의 임원, 중역</li> <li>• 판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• 전·현직 3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•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·현직 45급 공무원</li> <li>• 컨설턴트(석사학위이상 소지자)</li> <li>•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·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/ul>	250,000	120,000
일반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</li> <li>• 전·현직 45급 공무원</li> <li>• 중소기업체 임원급</li> <li>• 기업·기관단체의 부장급</li> <li>• 정부출연·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</li> <li>•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</li> <li>• 원어민 어학 강사</li> <li>•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/ul>	130,000	80,000
일반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·현직 6급 이하 공무원</li> <li>• 외국어, 전산 등 강사</li> </ul>	80,000	50,000
일반4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</li> </ul>	70,000	40,000
일반5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</li> </ul>	50,000	30,000

- ※ 세미나, 심포지엄, 패널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
- ※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대표이사가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- ※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- ※ 퍼실리테이터(FT) 강사수당은 최초 2시간까지는 일반강사 조건으로 지급하고, 3시간 이후부터는 초과 매시간 단가의 80%를 적용하여 지급

붙임 1.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개정(안) 1부.

2. 관련 공문 각1부. 끝.